



삶은 정직하게,
꿈은 원대하게,
심신은 건강하게

가 정 통 신 문

2024.4.19.(금)

생활안전부
(032)627-2061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자주적이고 창의적인 글로벌 인재육성’ 인천만수고등학교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로 91 (우22799) ☎(032)473-0372 <http://www.ims.icehs.kr>

2024학년도 스마트기기(핸드폰) 이용 수칙 및 교육활동 침해 예방 안내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인천만수고등학교는 학생들의 핸드폰을 일괄적으로 수거하지 않고 학생들의 이성적이고 자율적인 관리에 맡기고 있습니다. 이는 학생과 교직원들의 상호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수업 시간에 잘못된 핸드폰 사용은 자칫 교사들의 교육활동 침해를 가져오는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따라서, 학부모님께서서는 자녀들이 학교에서 스마트폰(핸드폰)을 사용하는데 교사들의 교육활동 침해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립니다.

★ 2024년 인천만수고 『학교생활규정 (제17조)』→통신기기 관련

제17조(전자(통신)기기 관리) 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 노트북, 태블릿pc, 휴대폰, 무선이어폰 등 모든 전자(통신)기기는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한다. 이하 전자(통신)기구는 노트북, 태블릿pc, 휴대폰, 무선이어폰 등을 말함.

- ⑤ 수업 중 전자(통신)기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교사의 지도하에 사용할 수 있다.
- ⑥ 학생은 동의 없이 타인의 음성이나 모습을 녹음, 녹화하거나 이를 유포 하여서는 안된다.

★ 교육활동 침해 행위 예시

[교원지위법 제19조제1항]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 가. 「형법」 제2편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11장(무고의 죄),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제314조(업무방해)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 라.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 행위로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3-12호) 제2조]

1. 「형법」 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4장 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2.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3.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4.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5.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6.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2024. 4. 19.

인천만수고등학교장 [직인생략]